도쿄화장품공업회 회보 제125호(1970년 4월 30일)에서 발췌

(본건에 대해서는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기술위원회 색소전문부회에서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용 타르색소 사용의 자발적 규제에 대해

표제의 건에 대해서는 기술위원회 및 타르색소부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금년도 2월 27일자 서한에 따라 타르색소의 사용상황 및 의견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아래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만일 사용하고 있는다면 시급히 대체품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 드리며, 업계로서는 향후 자발적으로 이러한 모든 색소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제160회 임원회에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황색404호(에로AB)에 대해서는 유일한 유용성 황색 색소이기 때문에, 두발용 오일로 사용을 한정하고, 다른 화장품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상, 본 건에 대해서는 4월 14일자 장공련 명의로 이미 산하 모든 회원에게 통지한 상태이다.

아래

1.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색소

녹색2호 라이트그린 SF황

적색214호 로다민B아세테이트

적색229호 알바레드

주황색202호의 (1) 디브롬플루오레세인NA

주황색202호의 (2) 디브롬플루오레세인K

황색202호의 (2) 우라닌K

적색502호 폰소3R

적색503호 폰소R

적색505호 오일레드XO

적색506호 퍼스트레드S

주황색402호 오렌지1

주황색403호의 (2) 나프톨옐로우SK

황색405호 옐로우OB

황색407호 퍼스트라이트옐로우3G

녹색402호 기니그린B

2. 두발용 오일에만 사용을 한정하는 색소

황색404호 옐로우AB

도쿄화장품공업회 1969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발췌

(14) 화장품용 타르색소에 관한 사항

바륨 및 지르코늄 레이크의 추가에 관해서는 작년도 결정 방침에 근거하여, 바륨 레이크 10개 품목, 지르코늄 레이크 7개 품목에 대해 각각 시험법 및 규격치를 첨부하여, 후생성 당국에 사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올해는 추가 제정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또한, 소비자 보호행정과 관련하여, 각종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계감독관청의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에 있어, 후생성에서도 식품첨가물 등의 규제검토 방침이 일부 보도되었다.

당회에서는 기술위원회 및 타르색소부회와 소위원회에서 화장품용 타르색소 전체에 대해 검토를 실시해, 향후 문제가 될 듯한 색소 35개 품목을 한정하고, 일단 다음 표에 열거하는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성이 적다는 점 혹은 다른 대체품 등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업계에서는 일단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지해 나갈 방침을 결정하였다.

향후 화장품에는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방침의 색소

|  |
| --- |
| 그룹I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용품)  녹색2호 라이트그린 SF황  그룹II (외용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용품)  적색214호 로다민B아세테이트  적색229호 알파레드  주황색202호의 (1) 디브롬플루오레세인NA  주황색202호의 (2) 디브롬플루오레세인K  황색202호의 (2) 라우린K  그룹III (점막에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용품)  적색502호 폰소3R  적색503호 폰소R  적색505호 오일레드XO  적색506호 퍼스트레드S  주황색402호 오렌지I  황색403호의 (2) 나프톨옐로우SK  황색404호 옐로우AB  황색405호 옐로우OB  황색407호 퍼스트라이트옐로3G  녹색402호 기니그린B |

이 방침에 근거하여 전회원 및 관련 색소업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황색 404호 “옐로우AB”에 대해서는 다른 적당한 유용성 황색 색소가 없기 때문에, 두발용 오일에 한해 사용하기로 하며, 다른 15개 품목의 화장품에 사용은 자발적으로 중지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장공련 명의로 산하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였다. (1970년 4월 14일자)

(주) 그 후 제반 정세를 토대로 재검토 결과, 황색404호 “옐로우AB”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화장품에 사용을 중지하게 되어, 모든 회원에게 그 내용을 다시 통지하였다. (1970년 5월 9일자)

더불어, 나머지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사용 희망이 강하므로, 시급히 문헌조사나 독성시험 등을 실시하여, 안전성 및 사용여부를 확인하게 되었고, 특히 아래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1969년 봄부터 경구급성독성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이 시험에 관해서는 전 품목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다시 검토를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회보123호 참조)

“경구급성독성시험” 실시 12개 품목

그룹II (4개 품목)

주황색204호, 황색205호, 청색202호, 청색203호

그룹III (8개 품목)

적색401호, 적색404호, 적색405호, 적색501호,

황색402호, 청색403호, 청색404호, 자색401호